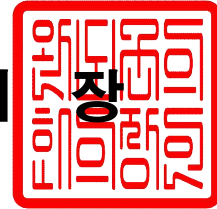


##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5월 26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2. 발 의 자 : 김 양 훈 의원 외 8명
3. 제정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,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

#### 4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6조제3항)
  - 자녀돌봄, 육아 등 특별휴가 지원대상 및 범위 개정  
(5세 이하 →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, 자녀 1인당 24개월 → 36개월)
-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6조제8항)
  -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불가
- 별표 4 경조사별휴가일수표
  - 출산 : 배우자(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) 10일 → 20일(25일)
  - 사망 :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1일 → 3일

#### 5. 관련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5. 26. ~ 2025. 5. 30.

##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회행정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01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## 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(전화: 061-550-590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

##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법 제21조제1항”을 “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법 제20조제3항”을 “제1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5세”를 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4개월”을 각각 “36개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단서의 후단 중 “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”을 “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을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“군정업무”를 “의정업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법 제21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4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5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.</p>
<p>제15조(병가)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<u>법 제20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5조(병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제14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 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특별휴가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6조(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

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-- 36개월-----  
-----  
-----

---. ----- 36  
개월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  
-----  
-----.

----- 육아시간  
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 
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
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을 할 --  
--.

⑨ -----  
-----  
----- 의정업  
무-----  
-----

있다.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⑩ 의장은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.

<삭 제>



**붙임 1****현행**

[별표 4]

**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6조제1항 관련)**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10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※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6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(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)	20(25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※ 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## 관 계 법 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[대통령령 제35259호, 2025. 2. 11.]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